

◆ D-24 임금유보 · 삭감 · 반납

1. 이미 발생한 개별 근로자의 권리로 보장된 임금을 반납하는 것은 집단적 의사결정 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반드시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임금의 반납이란 지급 조건이 충족된 것이므로 반납된 금액은 퇴직금 산정등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
2. 장래의 발생될 임금을 삭감하기 위하여는 단체협약변경 또는 취업규칙변경절차 (집단적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 근로계약의 하향조정(개별동의)절차를 통하여서만 삭감이 가능함. 위 방법에 의하여 삭감된 임금은 평균임금산정에서 제외됨.
3.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온 금품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지급됨으로써 근로조건화하여 대상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지만, 부정기적, 은혜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 감액할 수 있음.

]